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위한 정책제언

- 최근 발의된 국회 법안을 중심으로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선아 교수

목차

1. 왜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인가?
2.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방향
3. 21대 국회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비교
4. 바람직한 개편을 위한 주요 쟁점
5. 금융감독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6. 마무리 :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한 정책제언

1. 왜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인가?

1.1.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은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오래된 숙제

- *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감독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은 금융의 안정성, 금융의 건전성, 금융소비자보호에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임.
- * 오랜 논의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숙제로 남은 것은 두 가지 원인으로 요약됨.
 - (1) 금융감독의 주체를 정부로 할 것인가? 민간으로 할 것인가? - 금융관료의 저항과 금융감독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긴급성)과의 싸움
 - (2)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에 얼마나 달라진 금융감독을 보여줄 것인가? - 새롭고 구체적인 금융감독논의의 부족과 합의의 실패
- * 그동안 정부 주도 개편논의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의 개편’이 배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22번으로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금개혁의제에 관한 논의 실종되거나 축소됨.
- * 학계는 대체로 의견 합치 : 2013.7.4일 학계/전문가 143인 공동선언, 수많은 세미나와 연구성과
- * 국회의 입법적 노력 : 19-20대까지 여러 법안 발의, 21대에도 현재 2개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법안 제출됨.
- * 특히 19-20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중단사태의 원인으로 2015년 금융위의 규제완화가 지목되면서 필요성이 더욱 설득력 가짐.
-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도 금융소비자보호를 넘어서 금융감독체계개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짐.
- *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시기인 지금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적기.
- *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 금융감독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 최근의 금융감독 실패의 사례 소개.
- * 금융감독의 주체를 비롯하여 새로운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다양한 쟁점과 주장의 장단점 소개.
- * 특히 법률안 비교를 통해서 논의를 증폭시키고 합의 도출.

1. 왜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인가?

1.2.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긴급성

- * 현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 금융감독의 기본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훼손된 현 금융감독기구
 - * 대규모 금융사고의 반복, 금융의 신뢰와 안정성 저하, 금융소비자 피해 막대함.
 - * 최근의 금융사고들은 금융규제 완화의 전형적 구조에서 비롯됨 : 정치와 업계의 규제완화요구-금융위 찬성-정부안 발의-국회 의원입법
 - * 규제완화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역량의 제고방안은 부족.
 - * 결국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감독실패의 사례.
-
- * 최근의 금융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책
 - (1)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통합 관장이 국가 위험관리 약화를 초래
 - (2) 금융회사 건전성 내지 금융산업 성장을 소비자보호에 우선하는 감독정책이 소비자 피해 양산
 - (3) 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위험관리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하여 금융에 대한 신뢰회복 및 경쟁력강화 도모

수직적 이원화 체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08~	글로벌 금융위기	18 대	이 명 박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	금융위 신설(산업·감독정책 통합) 감독정책·집행 분리
				한나라당 의원 130인 (정부측 설치법 개정안 발의)	
2011~	저축 은행 사태			총리실 금융감독혁신 TF	정부조직화(위·원 통합 -> 정부조직) 금소처 설치(2012.5.)
2013~	동양 사태	19 대	박 근 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	금소처 독립성 강화 등(금융정책·감독·분리 제외)
				금융위(개편방안 국회 제출)	
				여당/정부 법안 발의	금융위·금감원·금소원 체제
				금감원(정부에 의견 제출)	
				야당 법안발의(이종걸, 최운열, 민병두등)	
2017~		20 대	문 재 인	국정기획자문위「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과제 22번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금융위 정책·감독 분리/금감원 소비자기능 분리·독립 검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금융위	금소원 설치로 논의 한정
				감사원(기관운영 감사)	금감원 조직·인력 등 통제 강화
				금감원 운영혁신 TF(2018.4월)	
2020~	사모펀드 사태	21 대		학계·소비자단체 등	산업과 감독정책의 분리, 소비자 보호 기구 분리, 금융안정 협의회 등
				오기형, 이용우 의원 법안발의	

견제와 균형 측면

금융산업정책

: 금융산업의 육성·경제성장 지원,

금융감독정책

: 금융회사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 정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주도
법령제개정권, 감독규정제개정권, 인허가권

* 현 체계는 성과가 가시적인 금융산업 정책에 경도되기 쉬운 구조. 견제와 균형이 훼손, 감독기능 약화 초래.

* IMF 2013년 한국 금융부문평가보고서(FS AP) "감독당국의 목표가 금융산업육성에 치우쳐 있다"

* 금융시스템의 위험에 대한 조기대처를 곤란하게 하는 요소.

효율성 측면

현 수직적, 이원적 구조

: 머리와 손발이 분리된 기형적 구조.

양 기관의 역할 혼선, 책임소재 불명확,

감독기능 비효율성의 주원인, 협력부재.

* 설치법 제18조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 감독규정 제개정권, 법규제개정권 금융위가 독점하여 금융환경의 변화 신속대응 미흡.

감독실무와 경험반영하지 못함.

ex> 2013년 동양증권사태

* 동일 업무 조직 경쟁, 업무중복, 비용 수반.

ex)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의 오랜 경험

* 양기관 충분한 사전논의없이 정책발표, 주요 현안 이견표출로 시장혼란 유발.

독립성과 자율성 측면

감독기구의 독립성·자율성 제고: 규제·감독 권한의 금융위 간섭 배제, 정부로부터 중립적인 예산편성, 자원확보의 자율성..

금감원: 공적 민간기구, 그러나 정부부처 금융위로부터 광범위한 통제, 독립성과 자율성 낮은 수준.

* 2019년 IMF "금융위원회는 전략수립, 비은행 관련 통계 부족 문제 해결, 금융시장육성 정책 및 위기대응 관련 역할에 집중하고, 금융감독원에 보다 많은 운영 및 집행 권한 부여하여야 한다." 금감원 운영·집행 독립성·자율성 강화를 권고.

* IMF 2008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평가한 IMF 보고서: 55개국 중 47위

* 한국은행과 비교: 정책결정·집행의 자율성, 예산·인사의 독립성 등 크게 미흡.

구 분		금 용 감독 원	한 국 은 행
업 무 수 행	의사결정기구 성격·형태	⌚ 금융위원회(정부기구) (집행기구인 금감원과 분리)	⌚ 금융통화위원회(민간) (한은 내부의결기구)
	의사결정기구 중립성	⌚ 금융위 위원 9명중 민간 1명 (추천권자 기준) * 증선위원(5인)은 모두 정부 측 인사	⌚ 금통위원 7명 중 5명이 민간인사(추천권자 기준)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자율성	⌚ 감독규정 제·개정, 인허가, 제재 등 주요 감독권한 이 금융위에 집중 (집행기구인 금감원의 자율성 제한)	⌚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 및 기관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 (정책결정·집행의 자율성 확보)
기 관	예산 자율성	⌚ 사업비 등 모든 예산이 금융위 승인사항	⌚ 급여성 경비(기재부 승인)를 제외한 예산을 금통위 의결로 확정
	임기	⌚ 원장 평균 근속년수(1.6년)가 법상 임기 3년을 크 게 하회/ * 99년 설립 이후 13명의 원장	⌚ '98년 이후 모든 총재가 법상 임기 4년 근속 * 98년 이후 5명의 총재

- 01** **국제적 기준에 맞게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의 분리**
금융위의 금융정책업무는 기재부로 이관, 국내외 금융산업정책업무를 정부가 통합 관장
금융감독정책업무는 신설하는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의 효율성 제고
- 02** **금융감독기구의 기능별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신설하는 금융감독기구를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기구와
영업행위 규제, 시장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구로 분리
- 03** **금융안정협의회의 법제화**
금융유관기구들간의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안정성 기구의 설치

3. 21대 국회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비교

3.1. 21대 국회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안

- * 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 업무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 *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 정책결정 기능 수행.
- * 금융감독원은 독립성이 있는 민간 공적기구 (안 제2조 법인격, 제3조 독립성) : 독립성 강화
- * 금융감독원에 그 업무에 관한 심의와 의결 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 : 내장형
-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겸임하도록 하며, 위원은 상임으로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 증권선물위원회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금융감독원에 설치(안 제25조) : 통합형
- * 금융소비자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상품 등 감독 등 금융감독원에 설치. : 통합형
- *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호견제와 균형 도모(안 제35조)
- *(업무)22조 1항 5호 6호 : 법령 제개정 요구,협의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규정 제개정폐지 사항.

3.2. 21대 국회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

- *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재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
-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적으로 설치 : **민관합동 : 독립성 약함**
-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개 기구로 구성 : **쌍봉형**
- *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금감원장을 겸임하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도 금융소비자보호원장 겸임.
- * 건전성 감독 :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 감독 :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소위 아래에 설치.
- * 금감원과 금소원의 예·결산 등은 국회 상임위 승인사항으로 강화.
- * 금감위 및 금소위는 금융기관 설립 등에 대한 인·허가권을 행사.
- * 금융안정협의회 설치 (안)제95조 : 금융안정을 위한 최종 정책 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 *(업무) 제11조 7호 금융감독 법령 및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보칙)제106-107조 재의요구권, 108조 금융관련법령의 사전 협의 및 제개정요청권, 국회보고, 109-113조 자료협조등.

주요 내용	오기형 의원안	이용우 의원안
1. 조직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통합형 체제 §1②항(목적) & §9금감원에 금융위설치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금소원 분리형/외장형 체제 §19
	공적 민간기구 §2법인격 & §3(독립성)	§3 국무총리소속중앙행정기관 §19 금감위의 지도감독,금융감독원설립
	9인	9인
	§45④항 원장-위원장 겸임	§24②항 위원장-원장 겸임
	감사 §45④항 : 기재부장관 제청-대통령임명	§24④항 감사 :위원회의결-위원장제청-대통령임명
2. 소속 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 금감원에 설치 §25 금융소비자위원회 : 금감원에 설치 §35	금소위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설치
3.법령제개정권	기재부가 행사. 제개정 요구 협의권 §22⑤호	기재부가 행사. 사전 협의의무, 제개정폐지요구권 §108
4. 감독규정 제개정,폐지권	금융감독위원회 §22⑥호	금융감독위원회 §17⑦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61⑤호
5.감독기구간 견제와균형		§95 금융안정협의회 :국무총리 소속 §106&107조 .재의요구권

구분	민간조직(내장형)	민관혼합(외장형)	공무원 조직
독립성	민간 공적기구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금융부 청
쌍봉형	20대 민병두의원안	20대 이종걸 의원안 21대 이용우 의원안	
소봉형		20대 강석훈 의원안 박근혜 정부안	
단봉형	20대 최운열 의원안 21대 오기형 의원안	2008년 이전	

*쌍봉형: 현행 감독기구로부터 행위규제기구를 분리
함에 있어 행위규제업무 전체 분리.
(시장규제업무포함)

*소봉형: 현행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업무만을
담당하는 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

*외장형: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집행조직 외부에 위치
ex> 2008년 이전 금감위와 금감원 체제

*내장형: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집행조직 내부에 위치

*민간조직(예:한은의 금통위, 일반 금융회사/기업의 이사회) 또는 공무원조직(예: 행정각부)의 경우는 각각 내장형

<참고> 감독기구 지배구조에 대한 국내 연구진 견해

구분	민간조직	민관혼합	공무원조직
단봉형	이태규(2010), 김흥기(2012), 안수현(2012), 양기진(2013), 오정근(2013), 김홍범(2016)	작업반(2000)	
소봉형	원승연(2011), 김우찬(2012), 정재욱(2013), 김효연(2013)	남주하(2013)	
쌍봉형	전성인(2009), 최흥식(2013), 윤석현 외(2013), 정홍주·이현복(2013), 윤석현(2014b), 윤석현 외(2016)		정순섭(2012)

(1) 금융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금융감독정책

ex> 벤처산업활성화의 수단, 부동산 정책의 수단 등

(2) 무모한 금융산업정책의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금융감독정책

ex>저축은행, 사모펀드 사례

(3) 견제와 균형, 효율성, 자율성 등 금융감독 본래의 기능에 반하는 요소의 제거가 필요함.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통해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효율성 회복하여야 함.

금융산업정책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기능을 감독기구(복수 가능)로 이관,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을 통합.

기재부의 비대문제는 별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소.

금융부의 신설은 정부조직이 현재 금융위원회 구조보다 더욱 커져서 관치금융의 폐단 심화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업무를 통합해야 한다는데 대해 대체로 의견이 합치되는 반면, 독립된 민간공적기구를 할 것인가?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큼.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 민간 공적기구가 우월

	민간조직	민관혼합	공무원조직
독립성	*독립성 강화됨 *관치금융 단절	*독립성 확보 의문 *사무국 재설치 가능성	*경험적으로 독립성 약화 *공무원조직 확대 가능성
전문성	*시장밀착형으로 전문인력 확보 유리 *금융감독 성격이 직접규제에서 자본금규제, 리스크중심 감독, 시장규율 등 위험관리 전문화 되는 추세 부합	*공무원 조직과 민간조직의 장점 상호보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에 비교적 유리	*공무원만 침익적 행정행위 주체라는 주장에 부합 *유능한 행정가에 불과. *공무원의 순환보직, 승진 등 감독에 부정적 영향 *위기시 금융감독자로는 적합
책임성	*전문성 확보가 책임성 강화에 도움 *민간에게 오히려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음	*민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오히려 공무원 임용규정, 정책적 판단 측면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음.
효율성	*법률제·개정 요청권·협의를권, 규제재개정권 부여하여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가능 *감독기구간 경쟁체제 및 협조 체제 구축도 가능 *시장밀착형이고 미래지향적 정보 습득에 유리	*운영방법에 따라 민관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 *민관조직 통합은 그 방법에 따라서 직원 사기 진작에 도움	*공무원 조직의 명령체계는 조직내부 효율성 도움. *시장과의 접점에서 비효율 발생

4.4. 금감위의 구성

- * 최고 합의제 의결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외장형 vs 내장형).
- *위원장과 원장은 겸임.
- *대통령이 임명 (위원추천의 방법 다양)
- *위원의 임기 법적 보장 필요: 3년 vs 4년
- *민간공적기구로 할 경우에도 규정 제개정권 가질 수 있음.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구조.
- *금융통화위원회도 통화정책 관련 규정 제개정권 갖고 있음.

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오기형 의원 발의안	금융감독위원회 이용우 의원 발의안
9인	7인	9인
1.위원장 2.부위원장 3.기재부 차관) 4.금감원장 5.예보 사장 6.한은 부총재 7.금융위원장 추천 2인 8.상공회의소 추천경제계 대표 1인	1.위원장 2.부위원장 중 1인 3.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장 4.금융감독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1인(상임) 5.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1인(상임) 6.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1인(상임) 7.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상임)	1. 위원장 2.부위원장 3.기획재정부차관 4.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부위원장 5.예금보험공사 사장 6.한국은행 부총재 7.국회추천 금융소비자보호전문가 (상임) 8.국회추천 금융전문가 1명(상임) 9.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비상임)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하여 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를 전제로 소비자보호기능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감독기구를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

(1안) 통합감독기구 내부에 민원, 분쟁처리기능을 담당하는 준 독립기구의 설치 : 소봉형

(2안) 금융감독원(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시장) 감독원으로 감독기구를 기능에 따라 분리하여 금융감독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

: 쌍봉형

<쌍봉형에 의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운영>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기관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

*금융소비자보호원(금융시장감독원):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금소원 산하에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옴부즈만 기구를 분리하는 방안도 가능.

*소비자보호 정책 등 집단적 소비자보호는 금융감독기구가, 개별 금융분쟁에 대해서는 산하의 옴부즈만 기구가 담당.

*옴부즈만 기구는 민원, 분쟁처리 결과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금소원에 보고.

(이용우의원안)제95조(금융안정협의회의 구성)①

금융안정을 위한 최종 정책 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안정협의회를 둔다.

② 금융안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당연직으로 하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씩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금융감독원장
3. 금융소비자보호원장
4. 한국은행 총재
5. 예금보험공사 사장
6. 비상임민간위원 6명

*목적: 감독유관기구들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 금융감독정책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 금융위기관리.

*역할: 금융감독관련 법규 제개정의 협의, 감독기구들 간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 검사 실시, 금융감독 정보 공유 및 자료 협력, 금융감독 업무 표준화, 보고서 서식의 제정 및 변경 및 금융감독 공동망 구축. 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

*금융안정협의회는 체제적 위기 징후 감시 및 시스템위기 시 위기 극복 총괄.

*미국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한 금융안정감시협의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 FSOC) 기능 참조.

<헌재 결정 요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 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중략).....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중략).....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중략).....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은 부실금융기관을 결정할 때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위임..... 위와 같이 입법위임된 사항은 전문적·기술적인 것으로..... 포괄위임입법금지를 선언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

법령제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부부처(기재부)

감독규정제개정권: 금융감독기구

* 감독에 관련한 사항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많이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감독업무에 관여 정도 큼.

* 금융감독기구가 실질적인 금융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 법률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체계 대신 금융감독규정에 바로 위임도 가능.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논란.

* 헌법재판소 99헌바91 "법령이 전문적인 기술적 사항인 경우 행정규칙인 고시에 바로 위임 가능"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에 대한 헌법소원>

민간이 금융감독업무를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실제로 국내 금융 역사에서, 관의 개입 및 이에 따른 감독부실이 오히려 큰 손실과 부담 초래 (예: 종금, 투신, 저축은행, 가계부채)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실질적 권한 부여가 관건인데, 이는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음
민간기구의 독립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부여 장치도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임

* 감독기구 장: 국무회의 심의,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 재의요구권, 금융안정기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채용제도 체계화

민간공적기구 역시 관료화되지 않을까?

앞으로 금융감독 권위와 위상은 전문성. 민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가 중심 조직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공무원 조직의 경우보다 관료화 폐해는 낮을 것.

부패 및 도덕적 해이 발생 통제를 위한 책임성 강화 장치

* 예결산 관련 사항 국회에 보고

* 감사위원회

* 내부통제제도 강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보상체계에 환수제도

투명성 제고, 검사기록 관리와 열람권 보장.

*시장의 고객 및 금융회사들과 소통 활성화

민간공적기구는 법적으로 타당한가?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위반이 아닌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민간 공적기구에게 금융감독권을 부여. 국가 고유의 금융문화, 현실적 필요성 및 금융감독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결정할 문제.

* 한국은행과 비교 : 민간 공적기구의 감독권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수행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한국은행도 사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의 주체로 다를 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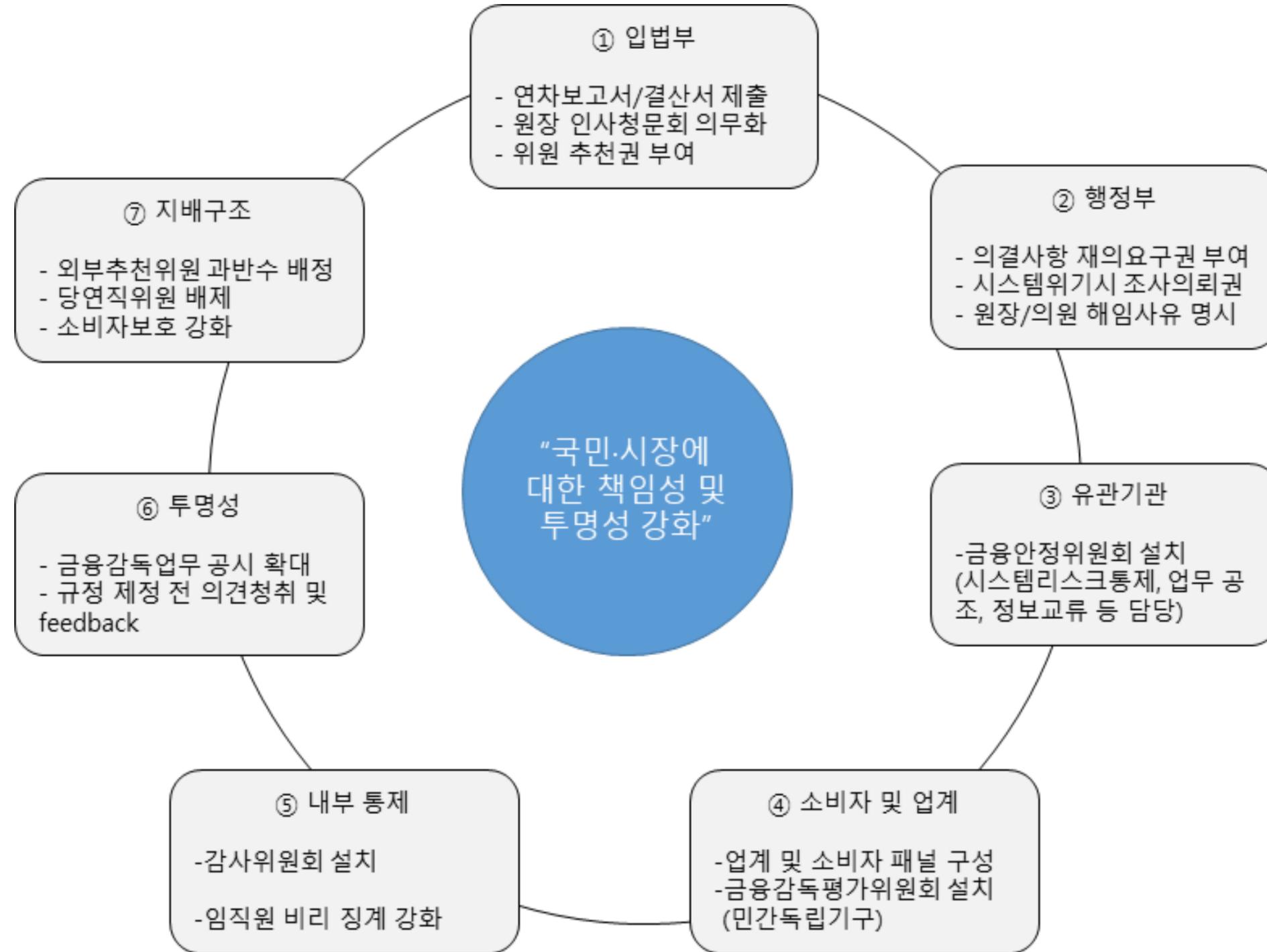
- *공적 민간기구에서 책임성 강화 제도 더욱 필요.
- *책임성 강화는 독립성 강화에 따른 권한 집중 등의 폐해 차단 역할.
- *금융감독기구는 검사·조사·제재 업무를 수행하는 등 특정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요소가 많음.
- *저축은행 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추락한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및 향후 감독 체계 개편에 따른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책임성 확보가 필수적.
- *현 금감원도 정부조직에 준하는 책임성 확보장치 확보 상태.
- *설치법상 규정 미흡: 한국은행법과 비교.
- *한국은행법 이상의 책임성 확보장치 명시 필요.

구분	한국은행(한국은행법)	금융감독원(금융위설치법)
재의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장관은 금통위 의결이 정부 경제 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 요구 가능(법§92) 	규정없음
감사원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음(법§95) 	규정없음 * 감사원법(§23) 감사원의 감사
국회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2회 이상 보고서 작성, 국회 제출(법§96①)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법§96②) 	규정없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7_에 따라 국정감사를 받고 있음
예산·결산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은 금통위 의결로 확정, 결산서는 기재부장관·국회 상임위 제출(법§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위: 국회 예산·결산 통제 금감원: 예산 금융위 승인, 결산서 금융위 제출(법§45)
공시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대차대조표 공고(법§101) 연차보고서 정부 제출 및 공표(법§102) 	규정없음 * 연차보고서 및 재무제표 홈페이지 공시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법§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법 등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법§69)

<표> 한국은행법과 비교

〈참고〉 MF 책임성 확보 장치

책임성 대상	주요내용 및 형식	책임성 유형
입법부	• 의회 또는 위원회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연간)	사후 - 설명
	• 특별청문과 구두 설명	사후 - 설명
	• 신규 입법 제안에 대한 특별 설명	사후 - 설명 또는 수정
	• 예산(안)에 대한 설명	사후 - 재무 책임성
	• 감사 보고	사후 - 재무 책임성, 설명 또는 수정
행정부	• 재무부장관 또는 정부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사후 - 설명
	• 금융부문 발전에 대한 특별 공식 설명 및 정보 제공	사후 - 설명 또는 정보
	• 신규 정부 규정(안)에 대한 제안	사후 - 설명 또는 수정
사법부	• 판사의 재검토	사후 - 수정, 절차
	• 감독상 착오에 따른 감독상 의무	사후 - 수정, 실체법 책임
감독대상 산업	• 신규 규정에 대한 사전 협의	사전 및 사후 - 설명 및 수정
	• 규제영향분석 및 비용효익분석	사전 및 사후 - 설명
	• 웹사이트에 감독관행 정보, 연차보고서, 보도자료, 감독기구, 대표자의 연설문 제공 등	사전 및 사후(이슈별로 다름) - 설명
금융소비자	• 설립목적	사전 및 사후 - 설명
	• 웹사이트에 감독관행 정보, 연차보고서, 보도자료, 감독기구, 대표자의 연설문 제공 등	사전 및 사후 - 설명
	• 소비자교육	사후 - 설명, 수정
	• 옴부즈만 계획, 소비자 고충처리 위원회(영국)	사후 - 설명, 수정



5. 금융감독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5.3. 금융분쟁조정기구와 분쟁조정의 강화

- *시장감독기구(소비자보호기구) 내 분쟁조정기구(ADR) 분리 설립
-쌍봉형 또는 소봉형 체제 내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서 분쟁조정기구를 시장감독기구(소비자보호기구) 내에 독립된 산하기구로 설치(윤석헌 외)
- *현행 분쟁조정은 민원제기건수에 비하여 조정회부건이 턱없이 적음.
- *금융분쟁조정업무가 다수 기관에 산재.
- *금융조정이 금융감독의 수단으로 전락.
- *효율성, 공정성, 전문성 미흡.
- *금융분쟁조정기구 내에 대부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전담 분쟁조정관(상근, 10-20인)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개별 분쟁조정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쟁조정관이 담당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 최종 결정권 보유.

금융분쟁조정강화제도

1. 제한적인 조정전치주의
소송중지제도 및 조정이탈금지제도를 확대하여
일정한 소액분쟁 사건의 경우.
2. 소액사건 편면적 구속력의 인정
3. 집단분쟁제도의 도입
4. (가칭)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논의도 가능

6. 마무리 :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위한 정책제언

- 01** 올바른 금융감독 체계가 금융산업발전의 지름길이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명을 다한 현행 금융감독기구의 체제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방향성은 (1)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업무의 분리, (2) 소비자보호기구의 분리와 옴부즈만 기구의 설치, (3) 금융안정협의회의 설치가 될 것임.
- 02**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앞으로 금융감독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특히 법령제개정권과 감독규정에 관련한 정부부처와 금융감독기구간의 이해의 조정,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 협조 의무 등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함.
- 03**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해관계자인 정부는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것. 국회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위한 정책제언
- 최근 발의된 국회 법안을 중심으로 -

박선아